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54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고민정・박정현・김성회

정을호 · 김준혁 · 조인철

김준형 · 김동아 · 강경숙

김문수 · 장철민 · 임호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교육 관련 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 위원장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5호) 및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교육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③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	
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u>금융위원회 위원장</u> ·국가인	- <u>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교육</u>
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	<u>위원회 위원장</u>
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	
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	
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	
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	
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